

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김종길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575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5년 03월 31일

발 의 자: 김종길 의원(1명)

찬 성 자: 강석주, 김규남, 김영철,
김원중, 김재진, 김지향,
김태수, 김현기, 김혜영,
남궁역, 남창진, 도문열,
문성호, 민병주, 박 석,
서상열, 송경택, 신복자,
옥재은, 유만희, 유정인,
윤기섭, 윤종복, 이봉준,
이상욱, 이종환, 최민규,
허 훈, 홍국표, 황철규
의원(30명)

1. 제안이유

- 낙후된 역세권의 도시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역세권 범위를 250미터에서 350미터로 확대하고, 관리 처분시 분양대상을 선정하는 사업의 유형으로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추가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대상지 범위를 역세권의 350미터 이내로 함(안 제3조제6항)
- 나.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를 정하는 사업유형에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추가함(안 제37조제1항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6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서울특별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제30조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역의 각 승강장 경계 및 출입구로부터 350미터 이내의 토지를 사업대상지로 지정할 수 있다.

제5조제4항 중 “서울특별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”을 “시장”으로 한다.

제37조의 제목 “(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대상)”을 “(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가로주택정비사업”을 “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조(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대상범위 등) ① ~ ⑤ (생략)	제3조(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대상범위 등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
⑥ 영 제3조제1항제4호가목 단서에 따라 시·도조례로 증감하는 역세권의 범위는 250미터로 한다. <단서 신설>	⑥ ----- ----- ----- ---. <u>다만,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제30조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역의 각 승강장 경계 및 출입구로부터 350미터 이내의 토지를 사업대상지로 지정할 수 있다.</u>
⑦ (생략)	⑦ (현행과 같음)
제5조(빈집정비계획의 수립) ① ~ ③ (생략)	제5조(빈집정비계획의 수립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에 비용 지원이 수반되는 경우 <u>서울특별시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</u> 과 협의하여야 한다.	④ ----- <u>시장</u> ----- -----
⑤ (생략)	⑤ (현행과 같음)
제37조(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대상) ① 영 제31조제1항제3호	제37조(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) ① -

에 따라 <u>가로주택정비사업</u>으로 분양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 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. 1. ~ 3. (생략) ② ~ ④ (생략)	----- <u>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</u> <u>규모재개발사업</u>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② ~ ④ (현행과 같음)
---	--

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대상 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낙후된 역세권의 도시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조례 제3조(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대상범위 등)제6항의 단서를 신설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업대상지의 범위를 확대하고, 제5조(빈집정비계획의 수립)제4항의 자구를 수정하고, 제37조(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 사업의 분양대상)의 제목과 내용을 수정한 것 등으로 별도의 비용을 수반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
담 당 관 주 병 준

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

추 계 분 석 관 김 진 형

☎ 02-2180-7954

e-mail : kjh0816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